##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37

발의연월일: 2020. 9. 9.

발 의 자:성일종·김희국·지성호

이 영・김희곤・추경호

전주혜 · 이명수 · 강민국

한기호 · 김형동 · 조수진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이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허위·과장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의무를 제외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.

그런데,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,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, 소위 가맹금 먹튀 등 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.

또한, 특정 유명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여 모방브랜드(미투브랜드)를 출시하고, 노하우(know-how) 전수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없이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등의 금전만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,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직영점 현황을 수록하도록 의무화함(안 제2조제10호아목 신설).
- 나.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함(안 제3조제2항).
- 다.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·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3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(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)

제3조제2항 중 "제9조 및 제10조(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"를 "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, 제7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5조의2"로 한다.

제6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 시 등록 신청 일 현재 해당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(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없거나,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. 다만, 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"정보공개서"란 다음 각 목	10
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	
한다.	<u>.</u>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아.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
	(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
	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
	다)_
11.・12. (생 략)	11.・1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적용배제) ① (생 략)	제3조(적용배제) ① (현행과 같
	<u> </u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제9조</u>	② <u>제6조</u>
및 제10조(제10조제1항제1호는	의2부터 제6조의5까지, 제7조,
<u>제외한다)</u> 는 모든 가맹사업거	제9조, 제10조 및 제15조의2
래에 대하여 적용한다.	
	<u>.</u>
제6조의3(정보공개서 등록의 거	제6조의3(정보공개서 등록의 거
부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	부 등) ①
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	
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	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② (생 략)

\_\_\_\_\_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 시 등 록 신청일 현재 해당 가맹사 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 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 는 직영점(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 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없거나,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. 다만, 해당 직영 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 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.

② (현행과 같음)